

#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58호      2021. 2. 10. (수)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8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교동공원]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20호 산사태 피해지 재해복구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 고시 --- 4
- 삼척시 고시 제2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6
- 삼척시 고시 제22호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 9

##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175호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1 - 18호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교동공원]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강원도 고시 제1974-2699호(1974.7.1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삼척시 고시 2020-192호(2020.11.2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삼척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교동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0일

## 삼척시장

#### 1. 사업의 위치 및 종류

- 가. 위치 : 삼척시 교동 754번지 일원
- 나. 종류 : 교동공원(근린공원) 조성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삼척시장
- 나.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 3. 사업의 규모

규 모		규모	토지내역	비 고
사업명	위치			
교동공원(근린공원) 조성사업	교동 754번지 일원	41,365.5㎡	삼척시 교동 754번지	

####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실시계획 고시일
- 나. 준공예정일: 2021. 12. 31.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sup>2</sup> )	편입면적 (m <sup>2</sup>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총계				41,365.5	41,365.5			
1	교통	754	공	41,365.5	41,365.5		삼척시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삼척시 고시 제2021 - 20호

## 산사태 피해지 재해복구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 고시

2020년 태풍 제9호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에 따른 산사태 피해지 재해복구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토지사용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8일  
삼척시장

1. 사업명 : 위 사업 실행면적(붙임내역 참조)
2. 사업기간 : 2021. 02. ~ 사업종료 시
3.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 간
4. 발주처 : 삼척시청 산림녹지과
5. 기타사항
  - 위 기간 내 의견이 없을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측량 조사 또는 장애물의 변경하거나 제거 소요자재의 채취 등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시행합니다.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산림녹지과 산불방지계 (☎ 033-570-38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태풍 마이삭-하이선 재해복구사업 필지 내역 1부. 끝.

## 편입용지조서

위 치		지 적 공 부				소 유 자	
읍면	리동	지 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원덕	이천	산471	임야	67,537	2,626	**도 **시 ** 19-**( *통*반)	김*용
	이천	산182-2	임야	62,579	465	서울특별시 **구 ***로**길 1*, 1**동 7**호 (**동,*화**** 아파트)	박*식
노곡	하군천	산19	임야	25,686	553	서울특별시 **구 **로 1**, **04호 (**동,장안****빌)	이*홍
	하마을	산44-3	임야	15,771	225	**도 **시 **구 ***로 **, **7동 **4호 (**동,**마을)	김*주
	하마을	산25-1	임야	46,612	452	**도 **시 ***로 4** (**동)	김*태
신기	대이	산56	임야	13,143	43	**도 **시 **면 **로 **4	임*혁
	용연	산128	임야	101,257	342	**북도 **군 **면 **로 6**-**	권*화
	용연	산89	임야	694	64		
	중봉	산118-1	임야	9,917	525	**도 **시 ***지*길 **-2 (**동)	박*래
근덕	하맹방	산104-2	임야	26,479	841	서울특별시 **구 ****로 ***가길 **, 2**호 (**동)	임*운
	오목	산82	임야	27,769	760	경기도 **시 **로 **-2*, 1**동 1***호 (**동,****아파트)	최*식
도계	늑구	산173	임야	24,521	1,016	**광역시 *구 **로**길 **-9, **1호 (**동)	이*기
		산21	임야	14,340	24	**도 **시 **로 64, 1**동 4**호 (**동,정상****아파트)	오*암
		산26	임야	7,967	23	**도 **시 도*읍 ***리길 3**-**	임*순
계		14필					

삼척시 고시 제2021 - 21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2. 9.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안길 51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2. 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24-3, 24-23, 35-2, 35-3, 174-10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안길 51	20210209	신축건물	20090626	행정구역및지역위치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진두리 24-3, 24-23, 35-2, 35-3, 174-10	계	1건					
부여	1					20210209	신축건물	20090626	행정구역및지역위치	도계평생학습센터



삼척시 고시 제2021- 2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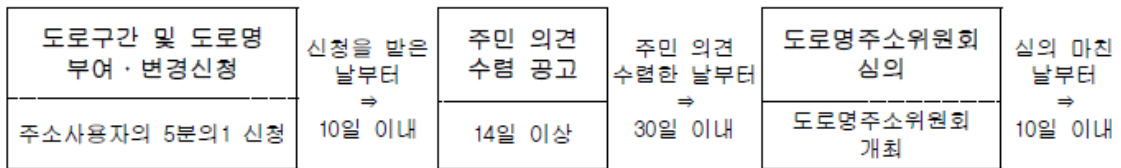
#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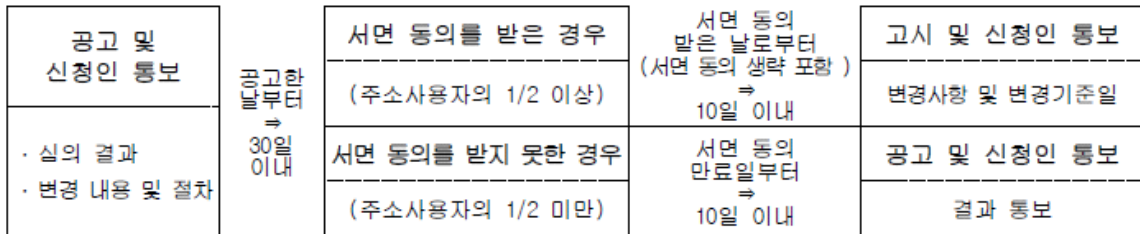
2021. 2. 9.

## 삼척시장

- 고시일 : 2021. 2. 9.
-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 고시내용 :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변경조서 및 위치도 참조)
- 도로명의 부여·변경 절차



### <변경의 경우>



-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변경·폐지로 도로구간의 끝지점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계(☎033-570-39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위치도

조서	구분	도로명	도로 위계	관할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변경 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 (m)	폭 (m)			
	변경 전 (기준)	사둔안길	길	미로면	사둔리 235-15	사둔리 206-1	3286	3	10	1 → 662	도로구간 종점연장
	변경 후	사둔안길	길	미로면	사둔리 235-15	사둔리 산 162	4110	3	10	1 → 830	



위 치 도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의4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변경·폐지로 도로구간의 끝지점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음.

## 삼척시 공고 제2021 - 175호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5일

## 삼척시장

##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상위법 근거조항 및 조문 내 관계법령 오류·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지원신청서를 보완하여 소방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조문의 근거법령 조항 개정(안 제1조)
- 나. 관계법령의 오류 및 개정사항 개정(안 제2조)
- 다. 소방시설 지원신청서에 관한 사항 개정(안 별지 서식)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동의근거 마련
- 라. 그 밖에 잘못 표기된 용어 정비

### 3. 의견제출

○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1년 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sanche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5916) 강원도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 전 화 : 033-570-3892
- 팩 스 : 033-570-3178
- 전자우편 : kpcom@korea.kr

- 붙임 1.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으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청소년기본법」 제2조의 규정”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8조 중 “소방위약계층”을 “소방취약계층”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대상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가장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노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담당공무원 확인란		

지원시설	<input type="checkbox"/> 소화기 ( )대 <input type="checkbox"/> 화재감지기 ( )대 <input type="checkbox"/> 기타장비 ( )대
------	--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1]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삼척시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 ----- ----- ----- ----- 규정함-----.</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삼척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li> <li>2. (생략)</li> <li>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li> <li>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li> <li>5. 「청소년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li> <li>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li> <li>7. (생략)</li> </ol>	<p>제2조(정의) ----- -----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2.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li> <li>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li> <li>5. 「청소년 기본법」 제3조----- -----</li> <li>6. ----- ----- 않는 ----- -----</li> <li>7. (현행과 같음)</li> </ol>
<p>제8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8조(지원예산 확보) ----- 소 방취약계층 ----- ----- -----.</p>

##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 조 례 명 :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서	
	수정안	검토사유